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5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간병 급여화 및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35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8.

(3) 회 부 일 : 2025. 1.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간병 급여화 및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①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하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 또는 34세 이전부터 시작하여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이하 “가족돌봄아동·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과 ② 가족돌봄아동·청년이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41조(요양급여)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간병</u>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4조의2(간병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의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1. <u>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u>의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u>돌봄대상가족</u>”이라 한다)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u>사람</u> 2. 34세 이전부터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

현행	개정안
제115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⑤ (생략)	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대상가족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 자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9.2%로 추계되며, 2025년에는 약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간병비 부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¹⁾,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전년 대비 상승률²⁾은 2020년 2.7%에서 2023년 9.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조의³⁾에 근거하여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5년 도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⁴⁾

1)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2023. 12. 21.

2)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통계청) : ('20) 2.7% → ('21) 6.8% → ('22) 9.2% → ('23) 9.3%

3)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는 것으로,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는 2019년 139만명에서 2023년 246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396,039	1,625,488	1,944,493	2,041,684	2,466,537
건강보험	1,231,753	1,446,950	1,736,842	1,824,410	2,196,540
의료급여	137,878	147,054	168,043	173,003	214,996
기타 (산재보험 등)	26,408	31,484	39,608	44,271	55,001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인건비를 지원(본인부담률 40~50%)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운영 간병서비스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거법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 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법」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 의료 최고도·의료고도 아면서 장기요양1·2등급 수준 환자	본인부담률 40~50% 전제, 간병비 인건비* 지원 * 월 급여 258만원, 퇴직금 및 보험료 54만원	「보건의료기본법」

노인장기 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노인 장기요양보 험법」
장애인활동 지원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 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 지원서비스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질병 등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등으로 나타남.⁵⁾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아동·청년들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⁶⁾⁷⁾

5)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2023.

6) 아시아경제신문, 실태 확정된 ‘간병살인’ 20대…韓 사회 큰 숙제 남겼다, 2022.4.2. 기사

7)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가족돌봄아동·청년 및 고립·은둔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5. 2. 14.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 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의 건강상태 >

(단위: %)

중증질환	장애인	정신질환	장기요양 인정 등급	치매	기타
25.7	24.2	21.4	19.4	11.7	45.6

주: 복수 응답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요양급여대상⁸⁾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간병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간병요양급여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간병 급여화와 관련하여,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추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가족돌봄아동·청년”에 대해서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안 제14조에서는 위기아동·청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장이 가족돌봄아동·청년의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민간서비스 등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하는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있고, 급여화에 따라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⁹⁾가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바, 간병의 급여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함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문제, 간병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의 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44조의 2제1항에서는 “간병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가족돌봄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병 요양급여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간병을 받는 돌봄대상가족¹⁰⁾이며 가족돌봄아동·청년은 본인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 제4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아동·청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¹¹⁾,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¹²⁾이 발의되어 계류 중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246만 6,537명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따른 급여비 지출액은 1조 1,614억원으로 추산됨.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4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05호)」

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료급여법」 소관)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소관)에 서는 위 개정안들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중간결과가 2024년 12월에 나오면 이를 보고받은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다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구체적 재원 마련 계획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시범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병에 대한 요양급여는 현재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간병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보험제도 및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간병 대상 및 제공체계 등 중복 여부 등

1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8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101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298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510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73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12호)」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간병 급여의 법제화는 기존 시행중인 사업과의 정합성, 급여의 우선 순위, 간병 수요,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등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간병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지므로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03